

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예술문화에 관한 연구와 창작활동을 통하여 민족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문화예술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소재)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 (사업) 연구소는 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- ① 학술연구 및 발표
- ② 창작활동 및 발표
- ③ 강연회 및 세미나
- ④ 자료수집 교환 및 전시
- ⑤ 다른 연구기관과의 학·예술적 교류 및 자료 교환
- ⑥ 학술회지, 창작집 등의 발간
- ⑦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직

제4조 (소원) 연구소의 소원은 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특별소원) 소장은 전 제4조 이외의 자라도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6조 (부서) ① 연구소에는 사진영상분야, 음악분야, 미술분야의 연구분야를 둔다. ② 연구소산하에 부설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제7조 (임직원)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·소장 : 1명

·간사 : 1명

·운영위원 : 각 분야별 약간 명

·감사 : 1명

② 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연구원, 조교,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 (임명, 임기)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수 있다.

② 운영위원 및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9조 (임무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
-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.
- ③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감사는 연구소의 일반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, 그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10조 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,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예산 및 결산
- 사업계획
- 규정의 개폐

③ 운영위원회는 소장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11조 (경비)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충당한다.

- 대구예술대학교 연구 보조금
-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 보조금
- 기타 수입

제12조 (연구비)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, 창작 지원금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예산 및 사업계획) 소장은 매년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결산 및 사업보고)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